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이 6. 15(화) 15:00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정부안으로 확정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상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과 지난해 정기국회에 제출했던 개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마련한 것으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따라 시장자율감시체제가 확립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시 강화 등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투명 경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출자총액 제한제도 졸업기준을 마련하고,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적용제외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 ▶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피해차단을 위해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허용범위를 현행 30%에서 15%로 단계적으로 축소 ▶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비상장·비등록 회사에 대해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공시 ▶ 지주회사체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 법상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회사간 출자 금

지 명문화,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 신설, 지주회사의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소유 금지 ▶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쉽게 하기 위하여 부채비율(100%)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 연장(현행 1년→2년), 지주회사로의 전환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는 유예기간을 모든 유형에 대해 인정, 비상장 합작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현행 50%→30%), 금융(일반)지주회사가 될 당시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금융)회사 주식에 대해서 2년간의 처분유예기간 인정 ▶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이 '04. 2. 4일로 시한만료 되어 3년 시한으로 재도입 하였고, 금융거래정보 요구대상을 금융기관의 특정 점포로 한정, 비밀누설시 벌칙강화 등 요구권 행사에 대한 통제 및 남용방지를 위한 장치를 강화 ▶ 기타 개정사항으로 기업결합심사제도의 효율화를 위해 피취득회사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 심사연장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 1차 신고후 추가지분 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재신고를 의무화하였고, 손해배상청구제도 개선 및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규정을 보완하였다.



『표시·광고의공정화및소비자정보의제공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3일 『표시·광고의공정화및소비자정보의제공촉진에관한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동 개정안은 표시·광고 등을 통해 각종 거래에 영향을 끼치는 정보들이 시장에서 무수히 제공되고 있으나 그 표시·광고 중에는 허위·과장·기만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적지 않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및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으며, 또한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않아 소비자피해 예방이 미흡한 현실이므로, 소비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정보가 반드시 표시·광고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법·제도 등에 대한 종합적 정보제공 기능을 보완하여 관련자들의 법 위반을 예방하며, 표시·광고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내용은 실증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도록 하여 그 진실성을 확보하는 한편, 소비자정보의 활발한 제공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1999년 법 제정 이후 법 운용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 명칭을 「표시·광고의공정화및소비자정보의제공촉진에관한법률」로 변경하여 소비자정보의 제공촉진이라는 법의 목적을 명확히 한다.
- ▶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정보들이 충분히 표시·광고될 수 있도록

중요정보 요건을 보완하고,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등도 중요정보고시와 통합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종합적 정보제공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한다.

- ▶ 중요정보의 발굴, 통합고시 제·개정 등 소비자정보제공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소비자정보제공협의회를 설치한다.
-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보의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으며, 동 조사를 소비자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소비자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사업자는 바르고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지도록 한다.
- ▶ 소비자정보의 발굴·제공, 조사·연구,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비자정보제공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 부당한 표시·광고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사업자 등은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증자



료를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실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 ▶ 사업자 등이 실증자료를 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경우 동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당해 표시·광고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광고실증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 ▶ 과징금 부과시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예방 또는 보상 노력 정도」를 참작할 수 있도록 보완한다.
- ▶ 사업자 등의 자율규약이나 자율심의기

구 운용과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그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자율심의의 활성화와 신뢰도·실효성을 제고한다.

- ▶ 금융·보험 사업자 등에 대한 직권조사 예외규정을 삭제한다.
- ▶ 통합고시제도 운용과 관련하여 중복 처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법의 표시·광고 의무화 사항을 위반한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 및 소비자정보의 제공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는 본지 부록(68면 이하)을 참조 바람.

2004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 원사업자 조사결과 및 향후계획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4년 3. 22부터 5. 15까지 건설, 제조, 소프트웨어사업 등 7개 업종, 10,000개 원사업자(대형업체)를 대상으로 2003년 하반기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은 79.1%로 증가한 반면, 어음결제비율은 19.3%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현금성 결제업체에 대한 서면조사 면제·포상, 세액공제, 별점감점, 과징금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확대와 지속적인 교육·홍보 강화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금 지연지급 등 대금지급조건은 다소 악화되고 범위반 혐의업체는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내수경기 부

진에 따른 중소기업의 생산활동 위축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이익률 격차 확대 등 경영난 심화와 조사대상이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재무구조가 견실하지 못한 기업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된 반면, 범위반 없는 100% 현금성결제 업체를 서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이외에 '02년부터 허위응답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04년부터 조사대상 원사업자에 대한 사전교육 등으로 성실한 답변을 유도한 결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공정위는 현재 원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는 30,000개 중소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5. 31부터 7. 3까지 원사업자 조사 결과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조사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6. 7부터 6. 15까지 현장확인조사를 완료하고, 조사결과 하도급거래가 있거나 법위반 행위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하도급거래가 없다고 응답한 업체

에 대하여는 표본을 선정하여 허위응답여부, 하도급법 위반여부에 대해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서면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법위반 혐의가 나타난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2004. 6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연황

공정위는 2004년 6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가 변동됨에 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을 시행령 제 21조제3항에 의거하여 2004년 7월 1일자로 변동내용을 당해 회사와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로 새로 편입된 회사는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 등 각종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

2004년 6월중 18개 출자총액제한기업

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2004. 7. 1. 현재 373개로 전월 대비 동일하고,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33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2004. 6. 1. 523개에서 2004. 7. 1. 현재 538개로 15사가 증가하여 공정거래법상 5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계열회사 수는 2004. 6. 1. 현재 896개에서 2004. 6월중 17개사가 신규 편입되고, 2개사가 계열제외 되어 2004. 7. 1. 현재 911개로 155개사가 증가하였다.

[2004. 6월중 계열사 변동 개요]

기업집단	2004. 6. 1.	편 입				제 외						총감	2004. 7. 1.
		회사 설립	주식 취득	기타	계	합병	매각	청산	친족 분리	기타	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18개)	373	1	1	-	2	-	1	1	-	-	2	-	373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기업집단(33개)	523	2	1	12	15	-	-	-	-	-	-	15	538
합계(51개)	896	3	2	12	17	-	1	1	-	-	2	15	911



[2004. 6월중 계열사 변동 내용]

◆ 편입 : 17개사(회사설립 : 3, 주식취득 : 2, 기타 : 12)

◆ 제외 : 2개사(지분매각 : 1, 청산종결 : 1)

기업 집단	편 입			제 외		
	회사명	영위업종	사유	회사명	영위업종	사유
엘 지	(주)한국케이블 TV울산방송	종합유선방송 송출 역무제공	주식취득	-	-	-
대 우 건 설	(주)지오시티에스	건설자재 임대업	회사설립	-	-	-
씨제이	씨제이인터넷(주)	게임제작 서비스	기 타	-	-	-
	(주)매니지먼트 서비스	뮤직비디오 제작	"			
	(주)아이앰픽처스	영화투자·배급	"			
	(주)아트서비스	영화세트장 제작	"			
	(주)디지털랩	온라인마케팅	"			
	(주)김종학 프로덕션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	"			
	이비스서비스(주)	인터넷사업	"			
	(주)엔트리브 소프트	소프트웨어 개발	"			
	(주)올솔루션즈 그룹	소프트웨어 개발	"			
	(주)프리머스 시네마	극장운영업	"			
	(주)예전미디어	음반기획제작, 판매	"			
	(주)시네마서비스	영화제작·배급	"			
현 대 백회점	(주)웰푸드	인력공급 및 대리업	회사설립	-	-	-
태 광 산 업	(주)한국케이블 티브이유비에스 연합방송	종합유선방송국 티브이광고· 프로그램 제작	주식취득	-	-	-
대 성	대구에너지 환경(주)	매립가스 등의 제조·가공·판매 등	회사설립	-	-	-
에 스 케 이	-	-	-	에스케이 투자신탁운용(주)	증권투자신탁 운용	지분매각
	-	-	-	아이에이씨씨(주)	도소매포함 유통업	청산종결